

□ **상생기반대응형(창업성장 플러스)(2유형)**

**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**

**「제주형 창업청년 육성사업」 참여기업 모집공고**

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내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「제주형 창업청년 육성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.

2021년 12월 30일

제주테크노파크원장

**1**

**사업개요**

□ **필요성 및 목적**

- 지역 내 창업 청년의 성장지원을 통하여 지역청년 창업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
-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통하여 지역 청년 추가 고용 창출 유도

□ **개 요**

- 사업명: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
- 세부사업: 제주형 창업청년 육성사업
- 주최/주관: 제주특별자치도 / (재)제주테크노파크
- 지원대상: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창업기업 중 아래의 해당되는 중소기업

- 주력산업: 스마트관광, 청정바이오, 그린에너지 산업
- 청년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본사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가

**※ 단, 청년 고용인원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청년은 제외**

**※ 청년 창업가 기준: 만 18 ~ 39세(1982. 1. 1 ~ 2004. 12. 31 출생자) 청년**

○ 접수기간: 2021. 12. 30.(목) ~ 2022. 1. 14.(금) 18:00

○ 사업기간: 약정일로부터 1년 범위 내 + 종료 후 청년 추가 고용 시  
1년 범위 내 인건비 지원

\* 지원 규모와 금액은 향후 행정안전부/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의거 하여 변경 될 수 있음

○ 지원규모: 12개사 내외(기업당 최대 15백만원, 1년차 기준)

○ 지원내용

- (1년차) 시제품제작, 마케팅, 연구개발, 컨설팅 등 창업기업 성장지원  
12개사(최대 15백만원 범위)

- (2년차) 청년 추가 고용 시 1년 범위 내 인건비 지원(연 24백만원의  
90% 지원, 기업당 2명 이내)

**※ 단, 1년차 참여요건인 청년 1명 이상 고용유지 시 2년차 지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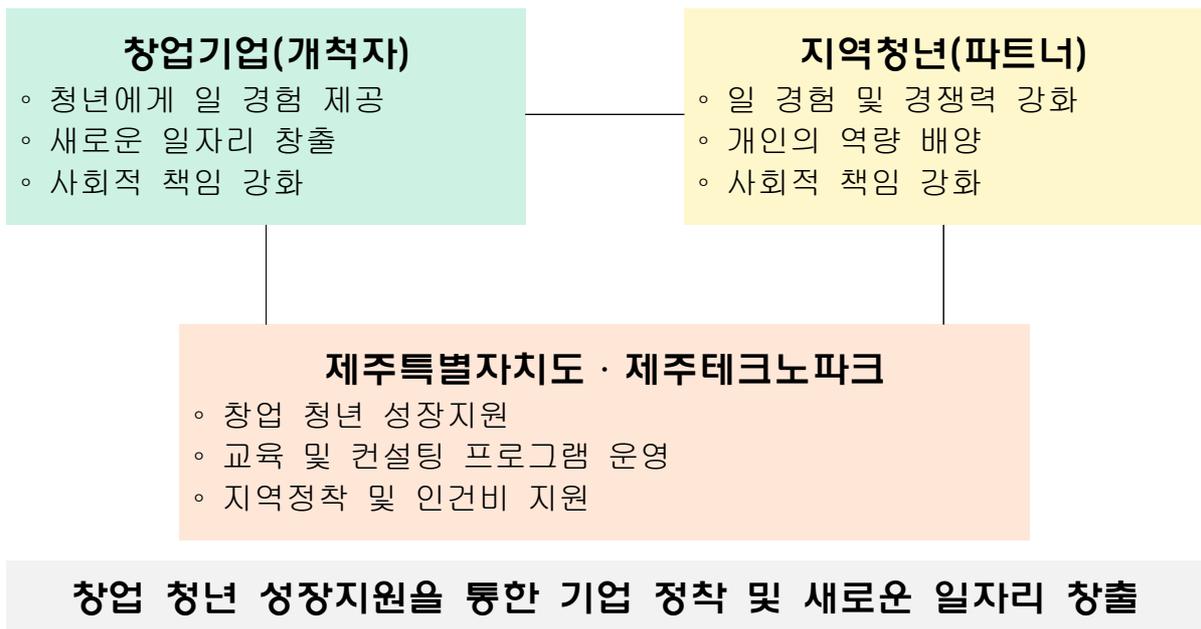
**※ 타 유형 중복참여 불가 및 창업지원경비와 인건비 동시 지원 불가**

\* 지원 규모와 금액은 향후 행정안전부/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의거 하여 변경 될 수 있음

○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'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  
(다만, '21년 기존유형과 '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)

**※ 기 선정된 '22년 신규유형 사업이 있을 경우, 다른 유형 사업 선정에 자동제외**

## □ 추진체계



□ 신청자격 및 기준: 아래의 각호에 모두 충족 되는 기업

1.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기업 중 아래의 해당되는 중소기업

분 야	해당기업
스마트관광산업	D.N.A.(Data·Network·AI) 등 디지털 기술이 지역산업(관광·MICE·문화, 1차산업 등)에 융합되어 제품, 서비스의 혁신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
청정바이오산업	제주의 청정바이오 소재를 활용하여 건강·뷰티 제품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
그린에너지산업	지능형전력서비스, 전기차충전인프라, 풍력·태양광 MRO, ESS 연계시스템 등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(CFI 2030)에 대응하고 에너지 수급 자족화 및 효율화를 위한 지역 대체에너지 육성 산업

2. 청년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본사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가

※ 단, 청년 고용인원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청년은 제외

※ 청년 창업가 기준: 만 18 ~ 39세(1982. 1. 1 ~ 2004. 12. 31 출생자) 청년

□ 지원제외 대상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지원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(선정 후 취소 가능)
  - 가.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
  - 나.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기업
    -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포함
  - 다.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, 국세·지방세 체납 기업
    - 체납이 있더라도 국세청 ‘완납증명서’ 발급 사업장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다.
  - 라.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감원이 있었거나 고용유지 조치중인 기업
    - 단,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1년간 참여 제한
  - 마.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
  - 바. 정부·지방자치단체, 제주테크노파크 사업의 참여 제한 중인 기업
  - 사. 신청기업이 공고일 기준 본사 설립 7년이 경과한 경우

아.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
- 1)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(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 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제외)
- 2) 법정관리·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(개인 회생·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, 면책권자 포함)
- 3)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

### 3

## 지원내용

### □ 사업화 지원

○ 지원규모: 12개사 내외(기업당 최대 15백만원, 1년차 기준)

○ 지원내용

- (1년차) 시제품제작, 마케팅, 연구개발, 컨설팅 등 창업기업 성장지원 12개사(최대 15백만원 범위)

\*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.

**\*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,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원칙**

- (2년차) 청년 추가 고용시 1년 범위 내 인건비 지원(연 24백만원의 90% 지원, 기업당 2명 이내)

**※ 단, 1년차 참여요건인 청년 1명 이상 고용유지 시 2년차 지원**

**※ 타 유형 중복참여 불가 및 창업지원경비와 인건비 동시 지원 불가**

\* 지원 규모와 금액은 향후 행정안전부/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의거 하여 변경 될 수 있음

### □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

○ 사업 참여기간 중 20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6시간 이상의 심화교육/컨설팅 지원

\* 참여기업 업종, 형태 등을 고려하여 향후 편성

\* 관리기관(제주테크노파크)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무 참여(이수시간 범위 내)

## □ 선정방법 및 항목

## ○ 제출서류 사전 검토

- 신청자격 부합성, 지원제외 대상 등 제출서류 검토

## ○ 평가방법: 서면평가(평가위원회 구성)

-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 위촉 후 평가 진행
- 사업 평가점수는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하며 고득점순
-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고득점순으로 지원, 6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

(동점자 발생시 사업계획 타당성 → 기대효과 → 지원 필요성 항목의  
합계 순으로 선정됨)

## ○ 평가항목

평가항목 및 내용		착안사항	배점
지원 필요성 (20점)	사업의 필요성	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	10
	기업역량	기업의 비전, 대표자 역량, 발전 가능성	10
사업계획 타당성 (50점)	사업계획 적정성	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	30
	사업비 구성 적정성	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	20
기대효과 (30점)	성과물 활용계획	성과물 활용계획의 우수성	10
	정량적 효과	매출액 증가, 고용 창출 등 가능성	10
	정성적 효과	기업의 직·간접 성장 가능성	10
합 계			100

## □ 추진절차

추진절차	기간	주요내용
모집공고	21.12.30. ~22.1.14.	·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
↓		
신청·접수	21.12.30. ~22.1.14.	· 온라인(제주산업정보서비스) 신청·접수
↓		
선정평가	'22. 1. 20.	· 선정평가위원회 개최(서면 또는 발표평가) ※ 평가순서 및 시간은 개별 통보 예정
↓		
결과통보	평가 후 1주 이내	· 평가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금 개별 통보
↓		
이의신청	통보 후 3일 이내	· 평가결과 통보일(발송일 기준)로부터 3일 이내, 1회에 한함
↓		
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통보 후 2주 이내	· 협약체결(지원기관 ⇔ 지원대상 기업) - 협약기간: 협약체결일 ~ '22. 12. 31. · 1차 사업비 지급(70%)
↓		
중간점검	'22. 7월 중	· 지원사업 사업수행 중간점검 - 방문 또는 서면 점검 실시 · 2차 사업비 지급(30%)
↓		
최종평가	'22. 12월 중	· 지원사업 최종평가 · 사업비 사용내역 검수 및 정산
↓		
성과 및 만족도 조사	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	·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조사 실시
↓		
계속 지원여부 결정	'23. 1월 중	· 2년차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

## 5

###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분

#### [부정수급의 주요유형]

- 지원금(보조금)의 목적외 사용(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)
- 신청서(사업계획서)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

#### [부정수급 처분]

-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모든 일자리 관련사업 참여제한
-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조치 등

## 6

### 기 타

- 자세한 사항 및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2022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」 운영지침에 따름

## 7

### 제출서류 및 접수처

#### □ 제출서류

① 신청서	1부	붙임 1	필수
①-1, 사업계획서	1부	붙임 2	필수
①-2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	1부	붙임 3	필수
①-3, 참여기업 확인서	1부	붙임 4	필수
② 사업자등록증(사본)	1부		필수
③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(사본)	1부		필수
④ 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 (유효기간 확인 必)	각 1부		필수
⑤ 4대 보험 완납증명 및 가입자 명부(공고일 기준 30일 이내 유효)	각 1부		필수
⑥ 기업 소개 자료(필요시)	1부	필요시	선택

\* ② , ③ 번 서류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에 등록된 기업은 제출 불필요

□ **제출기간 및 방법**

- 제출기간 : 2021. 12. 30.(목) ~ 2022. 1. 14.(금) 18:00
- 제출방법 : 온라인 제출 (**방문 및 e-mail 접수 불가**)
  - 양식교부 : 제주산업정보서비스 홈페이지(jeis.or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
- 접수처: 제주산업정보서비스(jeis.or.kr)에서 신청
  - \* 참가신청서에 반드시 대표이사 직인 후 신청서 업로드
  - \* **필수 서류 미제출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**
  - \* 단) 전산오류, 파일용량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오프라인 접수 가능
    - ※ 오프라인 접수인 경우 관리기관(TP)의 전산상의 오류일 경우에만 인정
    - ※ 기업 사전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접수 불가

□ **사업관련 문의**

기관명	부서명	담당자	연락처
(재)제주테크노파크	지역산업육성실	강동협 연구원	Tel. 064)720-3060
		최고다 책임연구원	Tel. 064)720-2312

□ **제주산업정보서비스 관련 문의**

기관명	부서명	담당자	연락처
(재)제주테크노파크	기업지원단	김경태 연구원	Tel. 064)720-3077